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나20182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나20182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53651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항소인H

변론 종결2015. 10. 23.

판결 선고2015. 12. 4.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536511 판결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3. 7. 4. 접수 제172284호로 마친 지분 1/5의 7/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3. 8. 16. 접수 제203326호로 마친 지분 12/40의 7/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3. 7. 4. 접수 제1722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40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3. 8. 16. 접수 제2033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2013. 7.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I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어서 2013. 8. 9. I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증여하고 남은 이 사건 부동산의 4/5 지분 중 3/8 지분(이 사건 부동산의 12/40 지분과 같다. 이하 '12/40 지분'으로만 표시한다)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각 증여계약서에 따른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는 '7월 3일 자 증여', '8월 9일 자 증여'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3. 7. 4. 피고 앞으로 7월 3일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40 지분에 관하여 2013. 8. 16. 피고 앞으로 8월 9일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I은 2014. 3. 6. 사망하였다. I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들로는 I의 직계비속인 원고들과 피고만이 존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나.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호증, 을 제5, 17, 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I은 K 출생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만 89세의 고령이었다. I은 2008년경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② I은 2013. 5. 1.경부터 수차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 7월 3일 자 증여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에도 I은 위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③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은 2013. 7. 3. 묻는 말에 대답

잘하고 의식 명료(alert) 하나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I은 2013. 7. 4.에는 묻는 말에 비교적 명확하게 대답하나 정신착란(delirious feature) 증상을 보였고, '나 살려줘', '딸을 불러줘'라는 내용의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3. 7. 5. I에 대하여 세로켈(Seroquel)을 투여하지 않았더니 기관 내에 삽입한 관을 빼는 발관(extubation) 후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 밤새 말하는 등 수면장애가 확인되어 세로켈(Seroquel) 6.25mg 투약하였고 이후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세로켈(Seroquel)은 정신 분열증,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④ I의 가사도우미로서 서울대학교병원에도 매일 방문하여 I을 간호한 J의 증언에 따르면, 2013년 7월경 I은 아침 무렵에는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아보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⑤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N의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N는 2013. 7. 3. 피고의 요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대행키 위해 I이 입원한 병실을 방문하였다. 당시 I은 병원 침대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비스듬히 앉아 눈을 뜨고 있었고, 사람이 오는 것은 알아보았으나 별다른 표정의 변화는 없었던 상태였다. 이에 N는 I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등기절차의 행행을 거절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I이 7월 3일 자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하려면, I이 스스로 7월 3일 자 증여계약서에 서명한다는 사실 정도를 인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 증여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 자녀들 중 1인인 피고에게 이전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① 앞서 본 것처럼 I은 상당한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병으로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였으며 반복하는 말도 '나 살려줘', '딸을 불러줘' 등 정상적인 정신적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이야기였고¹⁾, 자녀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② 피고는 N가 보낸 문자메시지(을 제16호증) 등을 들면서 N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N의 지위와 그 진술 내용, 제1심 소송기록에서 알 수 있는 위 증언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I은 7월 3일 자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위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이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처럼 I에게 요구되는 의사능력이 위 증여계약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이상, 을 제7호증의 1, 2(각 진술서), 제14호증(감정서), 제15호증(대한의사협회 감정회신서)의 기재나 증인 P의 증언에,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서명이 I의 것으로 보인다거나 위 증여계약 당시 망인이 사리분별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I에게 일상적인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I에게 위 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8월 9일 자 증여계약 체결 당시까지 I이 건강을 회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8월 9일 자 증여계약도 I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I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도 I의 상속인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상속지분 만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I은 2014. 3. 6.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I의 직계비속인 원고들과 피고만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보았다. 피고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8 지분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상속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위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7/8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진만

판사정재오

판사장철익

별지

1) I이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것이 아닐 여지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쟁점은 I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위와 같은 증상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것인지 치매로 인한 것인지는 I의 의사능력 존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